

의안번호	2206877
의 퇴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5.1.7
추계번호	24B6198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기본계획의 내용)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1항) 14. 건축물의 해체·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(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12조 (특별정비계획의 수립)	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1항) 19. 건축물의 해체·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(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7조(기본계획의 내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(특별정비계획의 수립)	

2. 상세 사유

- 기본계획의 내용(안 제7조제1항제14호 신설)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(안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)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건축물의 해체·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비용

과 해당 건축물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방안의 내용과 실시 방법에 따라 동 법 제21조¹⁾에 따른 비용 보조가 이뤄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런데 향후 노후계획도시 사업을 시행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활용할 기술, 방법 및 적용기준 등이 불확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될 탄소저감계획의 내용 및 해당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사업비 단가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전국 노후계획도시 추진 사업지역의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

[표 1]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 현황

구분	사업지역		계획 수립현황	
	지자체	노후계획도시	정비기본계획	특별정비계획
1기 신도시	성남	분당	계획수립 중(완료 단계)	—
	고양	일산	계획수립 중(완료 단계)	—
	부천	중동	계획수립 완료(24.12)	—
	안양	평촌	계획수립 중(완료 단계)	—
	군포	산본	계획수립 중(완료 단계)	—
	부산	해운대 등 5곳	계획수립 중(시작 단계)	—
	인천	연수 등 5곳	계획수립 중(시작 단계)	—

1) 제21조(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)

① **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**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**보조하거나 융자**할 수 있다.

1. **기본계획의 수립 비용**

2.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
3. **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**

4.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
5.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,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
가. 이주단지 조성 비용

나.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임차료, 관리비 및 주거이전 비용

다. 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상가의 건설비 및 이전 비용

6.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6조에 따른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구분	사업지역		계획 수립현황	
	지자체	노후계획도시	정비기본계획	특별정비계획
1기 신도시 외	수원	영통	계획수립 중(시작 단계)	—
	용인	수지 등 2곳	계획수립 중(시작 단계)	—
	안산	안산신도시	계획수립 중(시작 단계)	—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